

제 2 5 8 회 임 시 회  
제4차행정자치위원회  
2007년 3월 26일(月)

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안

---

# 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자 치 위 원 회  
전문위원 연 기 봉

##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강태원 · 김환동 · 이필용 · 조영재 · 연만흠 · 이종호 ·  
김인수 · 민경환 · 이범윤 · 최미애 · 박영웅 · 장주식 ·  
이기동 · 박재국의원(14인)

### 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7년 3월 6일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3월 20일

### 3. 제안이유

충청북도가 도민을 위하여 제공한 행정서비스가 당초 의도하던 목적과는 달리 주민의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끼치는 등 악영향을 미칠 경우 이에 대한 철회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리콜제도를 도입하고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### 4. 주요내용

가. 리콜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함(안 제4조).

나. 리콜 대상은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사업중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(안 제5조제1항)

(1) 각종 개발사업과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 또는 건설

(2) 각종 문화 · 예술 · 관광 · 스포츠 행사

(3) 기타 다수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 
단, 다음 사무들은 제외함(안 제5조제2항)

(1) 다른 법령에 의하여 권익의 구제절차가 규정된 사항

(2) 도의 예산·회계·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·  
사용료·수수료·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 
관한 사항

(3) 행정기구의 설치·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·정  
원·보수 등 행정 내부에 관한 사항

(4) 이 조례에 의한 리콜을 청구한 적이 있는 사항

다. 리콜의 청구는 200인 이상의 청구권자의 서명, 청구인 대표자 선  
정을 의무화함(안 제6조).

라. 리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리콜심사위원회를 둠(안  
제10조내지 제12조).

(1) 구성 : 15인 이내(전문가 9, 도의원 3, 공무원 3인 이내)

(2) 임기 : 2년(연임 가능)

(3) 기능 : 리콜 청구 내용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

## 5.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가 제공한 행정서비스가 당초 의도했던 목적  
과는 달리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 등 악영향을 미칠 경우 이에 대  
한 철회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  
으로

이 제도는 자치단체의 잘못이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취소나 무효를  
주장하는 ‘행정소송’이나 ‘행정심판’과 달리, 처분이 있기 전 정책의  
입안 단계에서부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, 사전에 행정 낭비  
를 막을 수 있는 잇점이 있다고 하겠음.

또한 이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합법을 앞세워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관행이 사라지고, 이해관계에 따른 주민들간 갈등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다만, 리콜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관점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고, 리콜제도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청구요건을 200인 이상으로 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.

붙임 :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안